

## 학칙시행내규 개정안 신구대조표

현행	개정안
	제23조 (성적평가) ⑧ 외국인 학생들의 성적평가는 학생들의 현지적응능력 등을 고려하여 해당 교과목 교원의 재량에 따라 성적평가방식을 절대평가의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.
	부칙 1.(시행일) 본 개정 학칙시행내규는 2024년 9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개정사유: 1. 외국인 학생 비율의 증가에 따라 외국인 학생의 현지적응능력을 고려하여 성적평가방식에 대한 담당 교과목 교원의 재량권 부여

- ☞ 전체구성원 의견수렴:    년    월    일부터    월    일까지 (홈페이지 및 업무용 메신저)
- ☞ 기획위원회 심의:    년    월    일
- ☞ 교무위원회 심의:    년    월    일    ☞ 대학평의위원회 심의:    년    월    일